



# 규정

## 교육과정 운영 및 심의 규정

문서번호	TWP-A302
제정일자	1997. 04. 23.
개정일자	2018. 02. 19.
개정번호	8
페이지	1/6

### 목 차

- 제1장 총칙
- 제2장 교육과정심의위원회
- 제3장 보칙
- 부칙

작성부서	교무처	제정일자	1997. 04. 23.
-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승 인
직 책	담 당	교무처장		총 장
서 명				
일 자				



	<b>규정</b>	문서번호	TWP-A302	
		제정일자	1997. 04. 23.	
	<b>교육과정 운영 및 심의 규정</b>	개정일자	2018. 02. 19.	
		개정번호	8	페이지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25조 및 학사규정 제16조 규정에 의한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의 교육과정 운영과 그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2.07.27>

**제2조(교육과정의 목표)** 이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와 국가목표를 지향한다.<개정 2012.07.27>

1. 교양과 인성을 갖춘 창조적인 기술인을 육성한다.<개정 2012.07.27.,2015.10.22.,2017.06.23.>
2. 미래를 선도하고 사회와 산업계에 기여하며, 기술혁신시대에 대처하는 협동적인 전문인을 계발한다.<개정 2012.07.27.,2015.10.22.,2017.06.23.>
3. 지역사회개발에 참여하는 성실한 민주시민을 배출한다.<개정 2012.07.27.,2015.10.22.,2017.06.23.>
4.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적인 과제수행에 기여하는 헌신적인 애국인을 양성한다.<개정 2012.07.27.,2015.10.22.,2017.06.23.>
5. 국·공립기관 등 각종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학문 수요의 충당<개정 2012.07.27>
6. 산업 및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1인 1기, 다 자격취득인의 양성과 교과 편성<개정 2012.07.27>
7. 신 학문의 연구 및 그 교과목에 대한 교재개발로 이 대학교의 특화 발전책 추진<개정 2012.07.27>

### 제2조의 1(교육과정개발 및 개편)

- ① 교육과정은 교양과정, 전공과정으로 나누며, 1년 주기로 산업체 동향 및 전공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개발 및 개편할 수 있다.<개정 2017.06.23.>
- ② 교양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개선위원회, 교양교육과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, 예비 직업인이 갖춰야 할 기초소양, 학생의 선호도, 재학생 또는 전공의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하여 교과목을 개발 및 개편 할 수 있다.<개정 2017.06.23.>
- ③ 전공 교육과정은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위원회, NCS 기반 교육과정 평가위원회, 기타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 위원회를 구성하고,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 성취도가 높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개발·개편 할 수 있다.<신설 2017.06.23.><개정 2018. . .>

**제3조(교과목의 편성 기준)** 이 대학교의 교과목은 교양 및 전공과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필수와 선택 과목을 둘 수 있으며,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교과목을 편성한다.

	<b>규정</b>	문서번호	TWP-A302	
		제정일자	1997. 04. 23.	
	<b>교육과정 운영 및 심의 규정</b>	개정일자	2018. 02. 19.	
		개정번호	8	페이지

1. 교양과목은 교양일반선택과 교양직업기초능력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5.10.22., 2018.02.19.>
2. 전공과목은 전공기초선택, 전공기초필수, 전공심화선택, 전공심화필수로 구성하며, 대학의 교육목표를 수행하고 국가의 산업동향과 지역의 산업체 요구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전공의 핵심 직무를 성취할 수 있도록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또는 그에 준하는 교과목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5.10.22., 2018.02.19.>
3. 교육과정은 전공의 교육목표 및 대학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, 각 전공의 교육과정은 각 전공별 직무 능력을 달성할 수 있는 이수체계에 맞춰 편성되어야 한다.<개정 2015.10.22.>
4. 온라인 강좌는 학과별 전체 교과목의 전공 과목 10%, 교양 과목은 제한없이 편성 운영 할 수 있다.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<신설2018.02.19.>

**제4조(교과배정과 학점단위)** ① 교과목의 배정은 각 과목별로 주당 2~3시간으로 하며, 그 외 사항은 교무처와 협의 후 진행한다.<개정 2018.02.19.>

② 교과목의 학점배정은 주당 1과목 1시간을 1학점으로 하며, 실험·실습의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4조의 1(실험·실습·실기 교과목의 편성)**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계열별 실험·실습·실기 교과목의 편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12.07.27>

1. 공업계열 50% 이상<개정 2012.07.27>
2. 인문사회계열 20% 이상<개정 2012.07.27>
3. 자연과학계열 30% 이상<개정 2012.07.27>
4. 예체능계열 50% 이상

## 제2장 교육과정심의위원회

**제5조(위원회 설치)** 이 대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함)를 둔다.<개정 2010.4.12., 2012.07.27>

### 제6조(구성)

-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, 간사 1인으로 한다.
- ② 위원장은 대학의 학사행정, 전임경력, 직급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교무처의 담당직원으로 한다.
- ③ 위원은 대학의 전임교원 경력이 많은 상위직 교수 또는 학과장으로 한다.
- ④ 위원의 수는 계열별 1인과 교양부문 교수 1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간명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.<개정 2018.02.19.>

	<b>규정</b>	문서번호	TWP-A302
		제정일자	1997. 04. 23.
	<b>교육과정 운영 및 심의 규정</b>	개정일자	2018. 02. 19.
		개정번호	8

**제7조(기능과 시행)**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, 심의된 사항은 총장의 승인에 의하여 시행한다.

①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<신설 2016.02.18.>

1. 교육목표의 수정과 교육과정의 개정(안) 심의
2. 교과편성과 그 운영의 적합성, 체계성 검토 및 해당전공 전임교원의 동의 여부<개정 2012.10.10.>
3. NCS 기반 국가산업·지역산업·지역사회와 연계한 수요자의 현황 및 요구분석(인력수급 및 취업수요전망, 환경분석, 설문조사 등)<개정 2018.02.19.>
4. NCS 기반 인재양성 분야와 핵심직무 선정, 교육목표 수립의 적합성<개정 2018.02.19.>
5. 직무별 능력단위 선택의 적합성<개정 2018.02.19.>
6. 전공별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의 연계성<개정 2018.02.19.>
7. NCS 기반 교육과정 직무별 이수체계도 체계성<개정 2018.02.19.>
8. 기타 NCS 기반 교육과정 준수여부<개정 2018.02.19.>
9. 교양 및 전공과목의 이론 및 실습의 적정배정 여부<개정 2012.07.27., 2018.02.19.>
10. 실험·실습시간의 적정 여부<개정 2012.07.27., 2018.02.19.>
11. 신 학문에 대한 교과과정의 새로운 개발, 심의<개정 2018.02.19.>
12. 교재 개발 및 그 편찬을 위한 타당성 검토<개정 2018.02.19.>
13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<개정 2018.02.19.>

② <삭제 2018.02.19.>

### 제8조(회의)

- ① 위원회의 소집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한다.
- ② 위원회의 개최는 재적위원 2/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

## 제3장 보칙

**제9조(교직과정)** <삭제 2015.10.22.>

**제10조(교재편찬)** ① 교과목의 편성 결과에 따라 적합한 출판교재가 없거나 개발되지 아니한 학문 분야에 대하여는 담당 교수 또는 담당 교수 책임 하에 외부 업체를 통하여 그 교재를 편찬한다.<개정 2018.01.04.>

	<b>규정</b>	문서번호	TWP-A302
		제정일자	1997. 04. 23.
	<b>교육과정 운영 및 심의 규정</b>	개정일자	2018. 02. 19.
		개정번호	8

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교재 또는 동 학문 분야에 대한 소요예산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**부칙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**부칙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	<b>규정</b>	문서번호	TWP-A302	
		제정일자	1997. 04. 23.	
	<b>교육과정 운영 및 심의 규정</b>	개정일자	2018. 02. 19.	
		개정번호	8	페이지
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